2023년도 제2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o 일 시: 2023. 10. 30. 월요일 10:30
-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임형주, 홍승기 위원
-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분과위원장
 - 2. 전차(제2023-26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 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781건(안건번호 제2023-210610호~213390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210610호~210620호(순번 1번~11번)는 블로그에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각 원저작물의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0621호~210637호(순번 12번~28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 번호 제2023-210638호~210640호(순번 29번~31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210641호~210649호(순번 32번~40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210650호~213390호(순번 41번~2781번) 불법 복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57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 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70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6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저작권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게시자 등이 노출된 부분의 비식 별 처리 된 부분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선화 선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제2호 안건 비공개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건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제2호 안건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5쪽~1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70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 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33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573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1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와 블로그에서 제공 중인 방송 불법복제물 총 21건임.
 - 심의 대상 게시물들은 모두 애니메이션 또는 드라마의 한 개 회차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 그 중 순번 1번 내지 8번은 현재 심의 대상 게시물이 비공개 상태임.

비공개 게시물의 경우 이웃공개, 서로이웃공개 등 제한 공개 형태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언제든지 공개 로 전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것이 예상됨. 즉,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체공개 상태의 게시물과 동일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으 며,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모두 시정 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

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11번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 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11번에 대해 시정권 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2번 내지 2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 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 하는 글이 게시된 사안 총 25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2번 내지 28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특별히 의견 없으실 것으로 생각되어 바로 의결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2번 내지 28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번 내지 3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융융융'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5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인 '★★★★', '융융융' 등으로 바로 연결하거나, 최신 대체 URL을 제공하는 알림 사이트의 주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로를 제공하고 있음.

직접링크로 연결되는 웹툰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는 모두 202 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함.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아니하므로,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

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9번 내지 31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해외 불법 사이트의 최신 대체 경로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해외 사이트로 확인되는지?
- 김선화 선임: 그러함. 최신 대체 URL로의 경로를 제공중인 2개 사이 트 모두 해외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의결하겠음. 가결에 동의하시는지?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 내지 31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2번 내지 4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 등에서 'EV BOX' 또는 'U BOX'라는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30건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

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2번 내지 40번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의 의견을 구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개별 게시물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한 기능의 불법 스트리밍 기기로 확인됨. 특별히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2번 내지 40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1번 내지 278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4,654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다이브'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2번은 영화 '다이브'으로, 2023년 11월 극장 개봉 예정인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

임.

(영화 '타겟'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73번은 영화 '타겟'임. 2023. 8. 30.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영화 '그란 투리스모'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42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영화 '그란 투리스모'임. 2023. 9. 20.에 극장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를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41번부터 2781번까지 총 4,654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SW, 게임 등을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 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웹소설, 만화,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1번 내지 2781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그리고 의결과는 별개로 보호원이 모니터링하는 안건 중 개봉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영상 저작물이 심의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부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신 저작물의 대량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는 부분을 재차 확인시키며, 회의록에 기재하길 바람. 이것으로 제2023-270회 심의를 마치겠음.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210610호~213390호(순번 1번~2781번)는 만장일치로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 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6.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임형주

위원 홍승기